

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49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에 따라 조례 상 용어 변경 내용 반영 및 위원회 업무효율 증가를 위하여 조례 개정

주요내용

- “진흥계획”에서 “지역계획”으로 법률 용어개정에 따른 조례상 용어 개정(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9조제2항,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1항제2호)
- 공공디자인 위원회 개최 인원 기준 조정(안 제17조제2항)
 -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개의를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매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로 개정

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4. 7. 5. ~ 2024. 7. 15. (1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[붙임 5]

○ 방침결정문 : [붙임 6]

[붙임 1]

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공공디자인 진흥계획” 을 “지역계획” 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진흥계획의 수립)” 을 “(지역계획의 수립)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진흥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 이라 한다)” 를 “지역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 이라 한다)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진흥계획” 을 각각 “지역계획” 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)” 를 “(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3항 및 제4항 중 “진흥계획” 을 각각 “지역계획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진흥계획” 을 “지역계획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진흥계획” 을 “지역계획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진흥계획” 을 “지역계획” 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” 을 “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매회의 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건축디자인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디자인팀장 이문준
	담당자 성명·전화	신연화 (행정 2635)

[붙임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</u></p> <p>제7조(진흥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안산시 공공디자인 <u>진흥계획</u>(이하 “<u>진흥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진흥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진흥계획</u>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(이하 “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<u>진흥계획</u>을 수립·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청 누리집(이하 “누리집”이라 한다)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)</p> <p>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시 <u>진흥계획</u>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진흥계획</u>의 수립·변경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장 지역계획</u></p> <p>제7조(지역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<u>지역계획</u>(이하 “<u>지역계획</u>”이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지역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지역계획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<u>지역계획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)</p> <p>① ----- --<u>지역계획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지역계획</u>-----</p>

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9조(가이드라인) ① (생략)

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0조(사업의 시행)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제12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(생략)

2.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
3. ~ 6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7조(운영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----.

④ 지역계획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가이드라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지역계획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업의 시행) ① ----- 지역계획-----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지역계획-----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매회의 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
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-----

-----.

③ ~ ④ (생 략)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-496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9월 2일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수정이유

-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의 요건 등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, 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을 원안으로 하고 현행 조례의 단어 오류를 수정함.

주요골자

- “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매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” 를 “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” 로 수정함.(안 제17조제2항)

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2항 중 “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매회의 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” 를 “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	제2장 지역계획	제2장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(진흥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안산시 공공디자인 <u>진흥계획</u> (이하 “ <u>진흥계획</u> 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7조(지역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역계획</u> (이하 “ <u>지역계</u> <u>획</u> ”----- ----- ----- -----.	제7조(지역계획의 수립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<u>진흥계획</u>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7. (생략)	② ----- <u>지</u> <u>역계획</u> ----- ----- -----.	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시장은 <u>진흥계획</u> 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(이하 “공공디자인 진	③ ----- <u>지역계획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③ (개정안과 같음)

흥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청 누리집(이하 “누리집”이라 한다)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)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

--.

④ -----
----- 지역
계획-----

-.
제8조(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) ① --
----- 지역계
획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지역계획-----

④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(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9조(가이드라인) ① (생략)

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0조(사업의 시행)

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제12조(설치 및 기능)

-----.

④ 지역계획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가이드라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지역계획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업의 시행)

① ----- 지역계획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설치 및 기능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⑤ 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가이드라인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10조(사업의 시행)

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~ ⑥ (개정안과 같음)

제12조(설치 및 기능)

